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. 9. 4 선고 2023가단9662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래

담당변호사 김태균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네라

변 론 종 결 2024. 7. 24.

판 결 선 고 2024. 9. 4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3. 5. 4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. 5. 11. 접수 제286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D은 C과 E을 상대로 투자금등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2. 11. 18. 법원으로부터 “C은 E과 연대하여 D에게 55,661,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. 9. 7.부터 2022. 11. 18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”는 내용의 판결(이하 ‘이 사건 판결금채권’이라 한다)을 받았고, 위 판결은 2023. 3. 31. 확정되었다(인천지방법원 2011가합326, 서울고등법원 2020나13869, 대법원 2022다304202).

나. 원고는 2023. 5. 20.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받았고, D은 2023. 11. 16.경 C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23. 11. 20.경 C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.

다. 한편 C은 2023. 5. 4. 그 배우자인 피고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증여계약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. 5. 11. 접수 제286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라.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포함)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D이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한 이후에도 실질적인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그 동생 D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나, 을 제1, 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성립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가 양도받은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C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,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고,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.

이 사건의 경우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확정된 이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.

다. 피고의 선의 등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C과 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명목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C의 채무초과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또한 피고는, 피고가 그 재산으로 C의 모인 F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고 오랜 기간 F를 봉양해 왔으므로,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서 그 실질은 C 앞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해지하여 반환받은 것이고, 또는 적어도 그 1/2 지분은 피고의 소유이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

또한 이유 없다.

라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행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상규

별지